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동이사의 명시적 도입 의무 부여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77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동이사의 명시적 도입 의무 부여(안 제6조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노동이사의 명시적 도입 의무 부여(안 제6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한국연구재단 임원(현행 이사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 중에서 1명 이상의 이사를 ‘3년 이상 재직 중인 재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으로 임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후단 신설>	제6조(임원 등) ① ----- ----- ----- . 이 <u>경우 최소한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재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조¹⁾는 한국연구재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연구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연구재단의 정관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²⁾(2022.8.4. 시행)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한국연구재단 정관」³⁾(2022.12.22. 개정)도 15명 이내의 이사 중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2022년 8월 이후 시행된

-
- 1) 「한국연구재단법」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이하 생략)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과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15인 이내의 이사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동이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⁴⁾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⁶⁾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부터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⁷⁾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

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3년 이상 재직한 해당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노동이사)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2022년 2월 3일에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⁸⁾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 정관」⁸⁾을 개정(2022.12.22.)하여 15명 이내의 이사 중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음.

다만, 2026년 1월 기준 한국연구재단 임원은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11명, 당연직 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

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8)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과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15인 이내의 이사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동이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중 1명은 2022년 1월 3일에, 나머지 10명은 모두 2022년 12월 30일에 임명되어 전원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 중 노동이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음.

[참고] 한국연구재단 임원 현황

구분	성명 (생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홍원화 (1963)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99~現) 경북대 총장('20~'24) 국가교육위원회 위원('22~'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22~'23)	'24.12.9~ '27.12.8
비 상 임 의 사	한용만 (1957)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12~現)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이사장('21~現)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원 위원('22~現)	'22.12.30~ '24.12.29
	배상훈 (1969)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교육 명예시장('22~現)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재개발단 지문위원('20~'22)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16~'17)	'22.12.30~ '24.12.29
	이보경 (1969)	강원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전문위원('21~現) 한국중국어현대문학학회 편집위원장('20~'22) 강원대학교 입학본부장('20~'21)	'22.12.30~ '24.12.29
	이은국 (1958)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비상임이사('14~'18)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16~'18)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16~'17)	'22.12.30~ '24.12.29
	장상현 (197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학술본부 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정책분과 위원장('19~現) 법제처 법령용어정비위원회 위원('18~現) 중앙대 교학부총장('15~'16)	'22.12.30~ '24.12.29
	허성철 (1967)	(주)루컴즈 대표이사	(주)대우루컴즈 기획조정실장('09~現)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위원('18~現)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관리 위원회 위원('18~現)	'22.12.30~ '24.12.29
	곽지혜 (1973)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태양광연구단 책임연구원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2~現)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 위원('21~'22)	'22.12.30~ '24.12.29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22~現)	'22.12.30~

구분	성명 (생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968)	가원 부원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21~現)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20~'21)	'24.12.29
	이영옥 (1964)	前 한국전력기술(주) 기술관리 처장	국립대구과학관 비상임이사('21~現) 과기정통부 핵융합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21~現)	'22.1.3~ '25.1.2
	이향숙 (1963)	이화여대 총장	대한수학회 회장('17~'18)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21~現)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21~現)	'22.12.30~ '24.12.29
	정범진 (1965)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22~現)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16~'21)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단장('12~'13)	'22.12.30~ '24.12.29
당 연 직	구혁채 (19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25.7.15~ 재임기간
	최은옥 (1965)	교육부 차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20~'22)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19~'20)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18~'19)	'25.7.14~ 재임기간
	임기근 (1968)	기획예산처 차관	조달청장('23)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22~'23)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22)	'25.6.11~ 재임기간
이 사 감 사	강성식 (1961)	한국연구재단 감사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20~'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19~'20)	'23.8.1~ '25.7.31

주: 임기를 굵게 표시한 이사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임.

자료: 한국연구재단.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노동이사 선임 관련법 개정 시행 이후 신규이사 선임 기회가 없었고, 2022년 12월 16일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2024년에 비상임이사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연임을 통보하여 후임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노동이사 선임 관련법 개정 및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인 2022년 7월에 2022년 임기 만료 예정인 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여 당해연도('22) 노동이사 도입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공운법 소관 부처인 舊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⁹⁾에 따라 후임 선임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여 현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같이 노동이사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으나 후임 선임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노동이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법문언은 “최소한 1명의 이사”를 노동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연구재단 정관」에서는 동일하게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문언을 통일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노동이사제의 운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개별법 차원에서 재차 규정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과 동일한 기준(노동이사 1명 선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수정동의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